

1. 개정이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개방주차장 홍보 항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주차장 홍보 항목 신설(안 제14조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개방주차장 홍보 항목을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면수 및 개방기간으로 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개방주차장의 홍보) 법 제19조제1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4조(개방주차장의 홍보) 법 제19조제1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